

##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7항,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의3,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폐기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진단비용)** ①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기술진단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며, 천원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관련 규정에 의하여 이미 기술진단을 실시하였거나 실시 중인 공공환경시설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 [별표]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제2조 관련)

### I. 수처리시설

| 시설별        | 규모별(㎥/일)             | 기본진단비용(천원) |
|------------|----------------------|------------|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 50미만                 | 57,279     |
|            | 50이상 ~ 100미만         | 65,546     |
|            | 100이상 ~ 200미만        | 75,185     |
|            | 200이상 ~ 300미만        | 79,319     |
|            | 300이상 ~ 400미만        | 83,452     |
|            | 400이상 ~ 500미만        | 87,586     |
|            | 500이상 ~ 600미만        | 91,719     |
|            | 600이상 ~ 700미만        | 95,853     |
|            | 700이상 ~ 800미만        | 99,986     |
|            | 800이상 ~ 900미만        | 104,120    |
|            | 900이상 ~ 1,000미만      | 108,253    |
|            | 1,000이상 ~ 1,500미만    | 112,387    |
|            | 1,500이상 ~ 2,000미만    | 120,654    |
|            | 2,000이상              | 128,921    |
| 공공폐수처리시설   | 100미만                | 44,879     |
|            | 100이상 ~ 200미만        | 49,012     |
|            | 200이상 ~ 400미만        | 53,146     |
|            | 400이상 ~ 600미만        | 57,279     |
|            | 600이상 ~ 800미만        | 61,413     |
|            | 800이상 ~ 1,000미만      | 65,546     |
|            | 1,000이상 ~ 1,500미만    | 69,679     |
|            | 1,500이상 ~ 2,000미만    | 73,813     |
|            | 2,000이상 ~ 5,000미만    | 77,946     |
|            | 5,000이상 ~ 7,000미만    | 82,080     |
|            | 7,000이상 10,000미만     | 86,213     |
|            | 10,000이상 ~ 15,000미만  | 90,347     |
|            | 15,000이상 ~ 20,000미만  | 94,480     |
|            | 20,000이상 ~ 40,000미만  | 98,614     |
|            | 40,000이상 ~ 60,000미만  | 108,253    |
|            | 60,000이상 ~ 80,000미만  | 112,387    |
|            | 80,000이상 ~ 100,000미만 | 116,520    |
|            | 100,000이상            | 126,159    |

#### 비고

- 진단비용은 시설별로 산정하되 시설별 공정조합에 따라 기본진단비용에 아래의 보정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가. 전처리 및 1차 처리공정(협잡물처리시설, 물리화학적처리시설)을 갖추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연계처리 하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보정률 : 0.5

나. 2차 처리공정(생물학적처리시설)을 갖추고 최종 처리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연계처리 하는 시설의 보정률 : 1.0

다. 2차 처리 후단에 3차 처리(응집침전, 가압부상, 여과, 오존 등)공정을 갖추고 최종처리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연계처리 하는 시설의 보정률 : 1.2

2. 아래에 해당하는 처리시설이 추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호의 보정률에 아래의 보정률을 더하여 산정한다.

가. 슬러지의 처리를 위한 소화 공정을 갖춘 처리시설의 보정률 : 0.2

나. 주 처리공정의 공법이 2가지 이상으로 분리되어 설치되어 있는 처리시설의 보정률

<표> 공법 수에 따른 보정률

| 공법수 | 2   | 3   | 4   |
|-----|-----|-----|-----|
| 보정률 | 0.2 | 0.3 | 0.4 |

3. 진단대행기관은 기본진단 이외에 추가적인 진단요구가 있어 진단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요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독성 방류수수질기준 적용대상 시설은 생태독성 분석수수료를 별도 가산할 수 있으며, 분석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시험수수료 금액표를 적용한다.(시설당 4회 분석, 부가가치세 별도)
5. 진단대행기관은 진단완료 후 인쇄본 진단보고서 10부와 성과품 1식(전산자료 포함)을 진단신청기관에 제출한다.

## II. 악취배출시설

| 시설별                       | 규모별(㎡/일)              | 기본진단비용(천원) |
|---------------------------|-----------------------|------------|
| 공공하수처리시설<br>및<br>공공폐수처리시설 | 500미만                 | 10,256     |
|                           | 500이상 ~ 1,000미만       | 23,533     |
|                           | 1,000이상 ~ 3,000미만     | 27,178     |
|                           | 3,000이상 ~ 5,000미만     | 33,808     |
|                           | 5,000이상 ~ 10,000미만    | 35,231     |
|                           | 10,000이상 ~ 50,000미만   | 41,846     |
|                           | 50,000이상 ~ 60,000미만   | 43,289     |
|                           | 60,000이상 ~ 70,000미만   | 47,752     |
|                           | 70,000이상 ~ 80,000미만   | 49,202     |
|                           | 80,000이상 ~ 90,000미만   | 50,645     |
|                           | 90,000이상 ~ 100,000미만  | 52,102     |
|                           | 100,000이상 ~ 150,000미만 | 59,532     |
|                           | 150,000이상 ~ 300,000미만 | 71,312     |
|                           | 300,000이상 ~ 500,000미만 | 84,375     |
|                           | 500,000이상 ~ 700,000미만 | 102,669    |
|                           | 700,000이상             | 115,085    |
| 분뇨처리시설<br>및<br>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 50미만                  | 27,311     |
|                           | 50이상 ~ 100미만          | 33,904     |
|                           | 100이상 ~ 200미만         | 38,340     |
|                           | 200이상 ~ 500미만         | 47,076     |
|                           | 500이상 ~ 1,000미만       | 50,823     |
|                           | 1,000이상               | 57,423     |
| 음식물류<br>폐기물처리시설<br>(톤/일)  | 10미만                  | 28,708     |
|                           | 10이상 ~ 30미만           | 35,301     |
|                           | 30이상 ~ 50미만           | 43,530     |
|                           | 50이상 ~ 100미만          | 51,538     |
|                           | 100이상 ~ 150미만         | 61,815     |
|                           | 150이상                 | 68,412     |
| 슬러지처리시설                   | 30미만                  | 43,615     |
|                           | 30 ~ 50미만             | 45,269     |
|                           | 50 ~ 100미만            | 49,029     |
|                           | 100 ~ 150미만           | 57,311     |
|                           | 150 ~ 300미만           | 67,508     |
|                           | 300이상                 | 78,650     |
| 음폐수처리시설                   | 30미만                  | 35,231     |
|                           | 30 ~ 80미만             | 39,802     |
|                           | 80 ~ 150미만            | 44,347     |
|                           | 150 ~ 300미만           | 55,032     |
|                           | 300 ~ 500미만           | 69,202     |
|                           | 500이상                 | 75,931     |

## 비고

1. 진단비용은 시설별로 산정하되 시설별 공정조합에 따라 기본진단비용에 아래의 보정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가. 전처리 및 1차 처리공정(협잡물처리시설, 물리화학적처리시설)을 갖추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연계처리 하는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보정률 : 0.5

나. 2차 처리공정(생물학적처리시설)을 갖추고 최종 처리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연계처리 하는 시설의 보정률 : 1.0

2. 아래에 해당하는 처리시설이 추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호의 보정률에 아래의 보정률을 더하여 산정한다.

가. 슬러지의 처리를 위한 소화 공정을 갖춘 처리시설의 보정률 : 0.2

나. 주 처리공정의 공법이 2가지 이상으로 분리되어 설치되어 있는 처리시설의 보정률

<표> 공법 수에 따른 보정률

| 공법수 | 2   | 3   | 4   |
|-----|-----|-----|-----|
| 보정률 | 0.4 | 0.8 | 1.2 |

3. 처리시설 부지경계선 밖에서의 악취물질 측정·분석에 대해서는 악취검사기관의 검사수수료에 따라 별도로 진단비용을 산정한다.
4. 진단대행기관은 기본진단 외에 추가적인 진단요구가 있어 진단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 대한 소요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검사수수료』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5. 진단대행기관은 진단완료 후 인쇄본 진단보고서 10부와 성과품 1식(전산자료 포함)을 진단신청기관에 제출한다.

### Ⅲ. <삭 제>

#### IV. 폐기물처리시설

| 시설구분                      | 시설규모별                    |               | 기본진단비용(천원) |
|---------------------------|--------------------------|---------------|------------|
| 소각시설<br>(kg/hr)           | 500미만                    |               | 16,208     |
|                           | 500이상 ~ 1,000미만          |               | 43,403     |
|                           | 1,000이상 ~ 1,500미만        |               | 75,215     |
|                           | 1,500이상 ~ 2,000미만        |               | 96,983     |
|                           | 2,000이상 ~ 5,000미만        |               | 135,846    |
|                           | 5,000이상 ~ 10,000미만       |               | 148,621    |
|                           | 10,000이상 ~ 15,000미만      |               | 167,783    |
|                           | 15,000이상 ~ 20,000미만      |               | 186,945    |
|                           | 20,000이상 ~ 25,000미만      |               | 206,107    |
|                           | 25,000이상                 |               | 231,657    |
| 매립시설<br>(m <sup>2</sup> ) | 20,000미만                 | 침출수처리시설 보유    | 116,783    |
|                           |                          | 침출수처리시설 미보유   | 77,855     |
|                           | 20,000이상<br>~ 50,000미만   | 침출수처리시설 보유    | 137,819    |
|                           |                          | 침출수처리시설 미보유   | 91,879     |
|                           | 50,000이상<br>~ 100,000미만  | 침출수처리시설 보유    | 157,616    |
|                           |                          | 침출수처리시설 미보유   | 105,077    |
|                           | 100,000이상<br>~ 500,000미만 | 침출수처리시설 보유    | 187,333    |
|                           |                          | 침출수처리시설 미보유   | 124,888    |
|                           | 500,000이상                | 침출수처리시설 보유    | 207,129    |
|                           |                          | 침출수처리시설 미보유   | 138,086    |
| 음식물류<br>폐기물처리시설<br>(톤/일)  | 사료화                      | 30미만          | 39,433     |
|                           |                          | 30이상 ~ 50미만   | 49,767     |
|                           |                          | 50이상 ~ 100미만  | 60,101     |
|                           |                          | 100이상 ~ 150미만 | 70,434     |
|                           |                          | 150이상         | 80,768     |
|                           | 퇴비화                      | 30미만          | 48,368     |
|                           |                          | 30이상 ~ 50미만   | 63,249     |
|                           |                          | 50이상 ~ 100미만  | 78,129     |
|                           |                          | 100이상 ~ 150미만 | 93,010     |
|                           |                          | 150이상         | 107,890    |
|                           | 혐기성<br>소화                | 30미만          | 56,394     |
|                           |                          | 30이상 ~ 50미만   | 74,168     |
|                           |                          | 50이상 ~ 100미만  | 91,942     |
|                           |                          | 100이상 ~ 150미만 | 109,716    |
|                           |                          | 150이상         | 127,490    |

| 시설구분                     | 시설규모별         |               | 기본진단비용(천원) |
|--------------------------|---------------|---------------|------------|
| 음식물류<br>폐기물처리시설<br>(톤/일) | 감량화<br>(사료원료) | 30미만          | 35,980     |
|                          |               | 30이상 ~ 50미만   | 44,867     |
|                          |               | 50이상 ~ 100미만  | 53,754     |
|                          |               | 100이상 ~ 150미만 | 62,641     |
|                          |               | 150이상         | 71,528     |
|                          | 감량화<br>(비료원료) | 30미만          | 36,226     |
|                          |               | 30이상 ~ 50미만   | 45,112     |
|                          |               | 50이상 ~ 100미만  | 53,999     |
|                          |               | 100이상 ~ 150미만 | 62,886     |
|                          |               | 150이상         | 71,773     |
|                          | 부속토           | 30미만          | 42,172     |
|                          |               | 30이상 ~ 50미만   | 54,159     |
|                          |               | 50이상 ~ 100미만  | 66,146     |
|                          |               | 100이상 ~ 150미만 | 78,133     |
|                          |               | 150이상         | 90,120     |
|                          | 지렁이분변토        | 30미만          | 35,789     |
|                          |               | 30이상 ~ 50미만   | 44,676     |
|                          |               | 50이상 ~ 100미만  | 53,563     |
|                          |               | 100이상 ~ 150미만 | 62,450     |
|                          |               | 150이상         | 71,337     |
|                          | 석회처리          | 30미만          | 36,294     |
|                          |               | 30이상 ~ 50미만   | 45,181     |
|                          |               | 50이상 ~ 100미만  | 54,068     |
|                          |               | 100이상 ~ 150미만 | 62,955     |
|                          |               | 150이상         | 71,842     |
|                          | 버섯재배          | 30미만          | 35,938     |
|                          |               | 30이상 ~ 50미만   | 44,825     |
|                          |               | 50이상 ~ 100미만  | 53,712     |
|                          |               | 100이상 ~ 150미만 | 62,599     |
|                          |               | 150이상         | 71,486     |

#### 비고

1. 진단대행기관은 기본진단 외에 추가적인 진단요구가 있어 진단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요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과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검사수수료』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2. 진단대행기관은 진단완료 후 인쇄본 진단보고서 10부 및 현장조사결과 1부를 신청기관에 제출한다.
3. 소각시설 중 동일부지내 2개 이상의 시설로서 동시에 기술진단을 신청하는 경우, 1개시설(용량이 가장 큰 시설)은 보정률 1로 산정하고 나머지 시설은 산출된 진단비용에 보정률 0.7을 적용하여 진단비용을 산정한다.
4. 매립시설 중 2개소 이상의 진단을 동시 신청할 경우 주 시설(매립면적이 제일 큰 시설)은 보정률 1로 산정하고 나머지 시설은 산출된 진단비용에 보정률 0.5를 적용

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5.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동일부지내 2개 이상의 시설로서 동시에 기술진단을 신청하는 경우, 1개시설(용량이 가장 큰 시설)은 보정율 1로 산정하고 나머지 시설은 산출된 진단비용에 보정율 0.5을 적용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6. 폐기물 반입정지 및 전기투입 불가 등 소각시설의 재가동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동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비용은 해당 기술진단신청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V. 완충저류시설

### 1. 완충저류시설

| 시설별    | 규모별(m³/일)            | 기본 진단비용(천원) |
|--------|----------------------|-------------|
| 완충저류시설 | 500 미만               | 8,990       |
|        | 500 이상 ~ 1,000 미만    | 12,504      |
|        | 1,000 이상 ~ 5,000 미만  | 13,273      |
|        | 5,000 이상 ~ 10,000 미만 | 13,516      |
|        | 10,000 이상            | 14,042      |

### 2. 차집관로

| 시설별  | 기본 진단비용(천원)            |
|------|------------------------|
| 차집관로 | 2,813 × 차집관로 연장 길이(km) |

### 3. 펌프장

| 시설별    | 규모별(m³/분)       | 기본 진단비용(천원) |
|--------|-----------------|-------------|
| 맨홀 펌프장 | 3 이하            | 251         |
| 중계 펌프장 | 3 이상 ~ 10 미만    | 2,517       |
|        | 10 이상 ~ 100 미만  | 3,357       |
|        | 100 이상 ~ 200 미만 | 4,196       |
|        | 200 이상 ~ 300 미만 | 6,714       |
|        | 300 이상 ~ 500 미만 | 8,393       |
|        | 500 이상          | 10,910      |

### 4. 유사시설

| 시설별  | 기본 진단비용(천원) | 추가 진단비용(천원) | 진단비용 적용방법                                  |
|------|-------------|-------------|--------------------------------------------|
| 유사시설 | 2,066       | 279         | 기본 진단비용(천원) + 추가된 유사시설 수(개소) × 추가 진단비용(천원) |

#### 비고

1. 완충저류시설, 중계펌프장 진단비용은 시설별로 산정한다.
2. 차집관로 진단대상 연장(km)의 소수점이하 숫자의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적용한다. 단, 진단대상 연장(km)이 1km 미만인 경우 1km로 한다.
3. 유사시설은 우수시설, 저류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등을 활용하여 사고유출수를 저류하는 시설을 말한다.

## VI.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관로

| 구 간 | 진단대상 연장<br>(km) | 기본 진단비용<br>(천원/km) | 구간 최대연장<br>(km) | 구간 최대비용<br>(천원) | 진단비용 적용방법         |
|-----|-----------------|--------------------|-----------------|-----------------|-------------------|
| 1구간 | 10이하            | 10,549             | 10              | 105,494         | 1km당<br>기본진단비용 적용 |
| 2구간 | 10~25이하         | 7,593              | 25              | 189,825         | 구간별<br>직선보간법 적용   |
| 3구간 | 26~50이하         | 6,193              | 50              | 309,650         |                   |
| 4구간 | 51~75이하         | 5,704              | 75              | 427,800         |                   |
| 5구간 | 76~100이하        | 5,302              | 100             | 530,200         |                   |
| 6구간 | 101~200이하       | 5,232              | 200             | 1,046,400       |                   |
| 7구간 | 201이상           | 4,937              | -               | -               | 1km당<br>기본진단비용 적용 |

### 비고

1. 진단대상연장(km)의 소수점이하 숫자의 경우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적용한다. 단, 진단대상연장(km)이 1km미만인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하여 적용한다.
2. 10km이하 및 201km이상의 진단비용은 진단대상연장과 해당하는 km당 기본진단비용의 곱으로 산정하며, 10km이상~200km이하의 구간에서는 구간별 경계부근의 진단비용이 역전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선보간법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text{직선보간법 : } Y = y_2 + \frac{(y_1 - y_2)(x - x_2)}{(x_1 - x_2)}$$

여기서,  $x$  = 당해 진단대상 연장,  $x_1$  = 구간 최대연장,  $x_2$  = 이전 구간 최대연장  
 $Y$  = 당해 진단대상 비용,  $y_1$  = 구간 최대비용,  $y_2$  = 이전 구간 최대비용

3. 진단대행기관은 당초 진단대상 이외의 추가적인 진단요청이 있어 진단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요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 신청 대상연장에 추가 대상연장을 합산하여 해당 연장에 대한 대상연장별 km당 수수료를 연장 증가분에 적용한다.
4. 여러 처리구역(배수구역)을 진단할 경우의 총 진단비용은 각 처리구역(배수구역)별로 진단비용을 산정한 후 합산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참고 : 2~3구간(10~50km) 진단비용 산정결과

- 대부분의 대상지역이 50km 이하에 해당하므로 2~3구간(10~50km)을 직선보간법으로 적용하여 진단비용을 산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진단연장<br>(km) | 진단비용<br>(천원) | 진단연장<br>(km) | 진단비용<br>(천원) | 진단연장<br>(km) | 진단비용<br>(천원) | 진단연장<br>(km) | 진단비용<br>(천원) |
|--------------|--------------|--------------|--------------|--------------|--------------|--------------|--------------|
| 11           | 106,501      | 21           | 166,018      | 31           | 218,583      | 41           | 266,513      |
| 12           | 112,452      | 22           | 171,970      | 32           | 223,376      | 42           | 271,306      |
| 13           | 118,404      | 23           | 177,922      | 33           | 228,169      | 43           | 276,099      |
| 14           | 124,356      | 24           | 183,873      | 34           | 232,962      | 44           | 280,892      |
| 15           | 130,308      | 25           | 189,825      | 35           | 237,755      | 45           | 285,685      |
| 16           | 136,259      | 26           | 194,618      | 36           | 242,548      | 46           | 290,478      |
| 17           | 142,211      | 27           | 199,411      | 37           | 247,341      | 47           | 295,271      |
| 18           | 148,163      | 28           | 204,204      | 38           | 252,134      | 48           | 300,064      |
| 19           | 154,115      | 29           | 208,997      | 39           | 256,927      | 49           | 304,857      |
| 20           | 160,066      | 30           | 213,790      | 40           | 261,720      | 50           | 309,650      |